



웨비나(Webinar) 개최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코로나19 종식 선언은 아직 먼 이야기인 듯하다. 감염병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다수의 병원에서는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환자 아닌 방문객의 내원을 제한하고 있고, 제약사 또한 영업사원이 병원을 직접 방문하는 형태의 영업방식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앞으로 언택트 마케팅이 사회 전반에 녹아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에 따라, 제약사들도 전통적인 대면 영업방식에서 나아가 새로운 형태의 비대면 영업 전략을 구상하며 포스트-코로나시대를 대비하고 있다.

웨비나(Webinar) 또한 새롭게 떠오르는 홍보방법 중 하나이다. 웨비나란 Web과 Seminar의 합성어로, 유튜브 등 동영상 방송 플랫폼을 이용하여 학술대회 또는 제품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래에서는 웨비나를 주최할 때 유의하여야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하고자 한다.

1. 강연 동영상의 저작권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는데(법 제2조 제1호), 강연 또한 어문저작물로서 저작물에 해당한다(법 제4조 제1항 제1호). 이러한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에게 귀속되므로 강연자에게도 당연히 영상에 대한 저작재산권이 발생하게 된다. 다만 저작재산권은 계약에 따라 양도가 가능하므로(법 제45조) 웨비나를 준비하며 강연자와 계약을 진행할 때 동영상 사용에 대한 저작권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강연자에 대한 강연료 지급 기준

아직 관련 부처에서 웨비나 관련 별도의 기준을 발표한 바는 없으나, 그 목적과 내용이 기존의 방식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웨비나의 경우에도 현재 통용되는 기준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및 동 규약 세부운용기준으로 보건의료전문가에게 강연을 의뢰할 경우의 비용 지급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기준에 따르면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지급하는 강연료는 각 세금 포함 강연 1시간당 50만원, 1일 100만원 및 연간 300만원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세부운용기준 제12조 제1항 제1호). 만약 보건의료전문가가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공직자등에 해당할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기준에 따라야 할 것이며, 청탁금지법 상의 강연료 상한금액과 비교하여 더 낮은 금액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세부운용기준 제12조 제1항 제2호).



또한 강연 동영상은 촬영하여 편집한 후 그 편집본을 수 회 사용하는 방식으로 웨비나를 개최한다 하여도 강의료는 1회만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해당 동영상을 재송출할 경우 그 비용은 강의료와 별도로 산정하여야 하며, 강의료와 비례하여 적절히 감액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와 동시에 웨비나 개최와 관련한 내부 서류를 꼼꼼히 마련하여 정당한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리베이트의 일환으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문부 이시은 대리
TEL. 02 565 9801